도보 충청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395호 2017. 10. 10.(화)
www.chungnam.go.kr



선람	기관의장	회람						

행복충만 충청남도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보 관 Tel:041)635-203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조 례

ㅇ 제4293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 2

ㅇ 제4294호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8

ㅇ 제4295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12

ㅇ 제4296호 :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17

고 시

ㅇ 제2017 - 361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현황 ····· 21

ㅇ 제2017 - 363호 :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고시 ····· 22

공 고

ㅇ 제2017 - 1227호 : 부동산개발업 폐업 내용 공고 ····· 23

시군행정

ㅇ 아산시 공고 제2017 - 2115호 : 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24

ㅇ 홍성군 공고 제2017 - 1041호 :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 26

ㅇ 예산군 고시 제2017 - 128호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운동장) 결정(변경) · 실시 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7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17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293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 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관할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 · 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①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 · 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4. 시설안전: 학교 시설 · 설비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교통안전: 등 · 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7.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 수립) ①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관리 ·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으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과 교육안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어야 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⑩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17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294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17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295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17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296 호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류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고시 제2017 - 3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 하였기에 게재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등 록 번 호	단 체 명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록 (변경)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 고
2017-459	충남노동 인권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20번길 21, 3층	양수철	2017.9.5	소외계층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권침해 개선사업 등	041-549-5770	자치행정과	신규
2017-460	바르게살기 운동태안군 협의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42, 주연파크 202호	고태종	2017.9.21	시민의식함양, 사회봉사활동	041-674-5977	도민협력 새마을과	신규
2017-461	당진웰다잉 문화연구회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길 1-5, 지하1층	성용모	2017.9.22	노인복지 교육사업	010-68**-34**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신규

충청남도 고시 제2017 - 363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10.

충청남도지사

1. 매립면허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직무대리 장성익

2. 매립실시계획 승인 내용

○ 매립실시계획 변경 사항 : 준공기간 연장

- 당초 : 1987.4.27.~2017.9.30.
- 변경 : 1987.4.27.~2018.9.30.

○ 매립실시계획 변경 사유

- 토지조성을 위한 매립지 정리 및 평탄화 등 매립공사

○ 매립 위치 및 면적

- 충남 서천군 마량리 산17번 지선과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010-14번지 제방 안쪽의 공유수면 599,633㎡

○ 매립목적 : 서천화력발전소 부대시설부지 및 회처리장 조성

3.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 일 자 : 2017.9.29.(승인번호 제2017-1호)

충청남도 공고 제2017 - 1227호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폐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 표 자)	등록말소 연 월 일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 록 번 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대평종합건설(주) (조태호)	2017.9.29.	충남17000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3 ,502호(에스엠빌딩)	전문인력 충원어려움

2017. 9. 29.

충청남도지사

아산시 공고 제2017 - 2115호

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아산시 방축동 41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방축동 410-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사업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대로3-8호)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대로3-8호 L=173.8m B=8.7m, A=2,17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아산시장

2)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8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사. 열람기간 : 2017. 10. 10. ~ 2017. 10. 30.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4,613	2,175						
1	방축동	410-4	전	2,192	186		황명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25, 110동 601호(상현동, 만현마을1단지롯데캐슬아파트)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46(모종동)	근저당권 지상권
2	방축동	410-18	전	1,008	266		황명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25, 110동 601호(상현동, 만현마을1단지롯데캐슬아파트)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46(모종동)	근저당권 지상권
3	방축동	410-33	도	23	23		아산시				
4	방축동	410-34	도	66	66		아산시				
5	방축동	410-48	도	490	48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방축동	410-69	구	580	574		국토해양부				
7	방축동	410-74	도	66	66		아산시				
8	방축동	410-77	구	194	194		국토해양부				
9	방축동	427-4	전	123	98		아산시				
10	방축동	427-5	임	42	42		아산시				
11	방축동	427-7	도	1069	7		아산시				
12	방축동	427-16	도	343	30		국토교통부				
13	방축동	427-17	전	6	6		아산시				
14	방축동	427-19	임	18	18		아산시				
15	방축동	산52-3	임	24	24		이정수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59-80			
16	방축동	산52-12	임	8331	54	1/4	황명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48 미주아파트 비동 302호			
						1/4	황명혜	서울 용산구 이촌동 298-15 민영아파트 디동 302호			
						1/4	황명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54 미주아파트 에이동 201호			
						1/4	황명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14 민영아파트 엔동 103호			
17	방축동	산52-15	임	38	38		아산시				

홍성군 공고 2017 - 1041호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10.

홍 성 군 수

1. 열람기간 : 2017. 10. 10 ~ 2017. 10. 23(14일간, 공휴일 포함)
2. 열람장소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630-1435)
3. 인가신청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19-5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
      ○ 명 칭 : 군계획시설(도로)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 소로2-187호, L=193.0m, B=8.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성 명 : 홍성군수
   마. 사업기간 : 인가일 ~ 2020.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게재생략

예산군 고시 제2017 - 128호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운동장) 결정(변경) ·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7. 10. 10.

예 산 군 수

가.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설 운동장	운동장	예산읍 향천리 265-1일원	135,574	-	135,574	충남고 제108호 ('88.05.12)	-

2)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예산읍 향천리 257 일원	135,574	-	135,574	충남고 제108호 (1988.05.12)	
-	1	주경기장		27,852	-	27,852		
-	2	보조경기장		17,435	-	17,435		
-	3	실내체육관		6,423	-	6,423		
-	4	소체육관		3,263	-	3,263		
-	5	테니스장		8,960	-	8,960		
폐지	6	족구장		2,918	감) 2,918	-		
-	7	게이트볼장		5,123	-	5,123		
-	8	국궁장		5,301	-	5,301		
신설	9	볼링장		-	증) 3,044	3,044		
변경	10	주차장		21,084	증) 421	21,505		
폐지	11	조정선수숙소		569	감) 569	-		
변경	12	녹지 및 기타		15,392	증) 97	15,489		
변경	13	도로 및 광장		21,254	감) 75	21,179		

○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족구장	• 시설폐지 : 2,918㎡	• 볼링장 설치에 따른 족구장 시설 폐지
9	볼링장	• 신설 : 3,044㎡	• 운동장 내 군민여가와 정서함양을 위한 볼링장 설치
10	주차장	• 면적변경 : 21,084㎡ → 20,505㎡ 증) 421㎡	• 볼링장 설치로 인한 면적 감소 • 조정선수숙소 부지에 주차장 설치
11	조정선수숙소	• 시설폐지 : 569㎡	• 조정선수숙소 부지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
12	녹지 및 기타	• 면적변경 : 15,392㎡ → 15,489㎡ 증) 97㎡	• 주차장 설치로 인한 면적 감소 • 볼링장 주면 녹지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
13	도로 및 광장	• 면적변경 : 21,254㎡ → 21,179㎡ 감) 75㎡	• 주차장 설치로 인한 면적 감소

○ 시설물 배치계획

구분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주경기장	3(1)	3(1)	1,371.71	-	1,371.71	1,912.18	-	1,912.18	
		(지하층)						168.97	-	168.97	
②		실내체육관	3(1)	3(1)	4,371.81	-	4,371.81	8,501.96	-	8,501.96	
		(지하층)						2,041.11	-	2,041.11	
③		소체육관	1	1	1,255.85	-	1,255.85	1,255.85	-	1,255.85	
④		게이트볼장	1	1	1,110.17	증)1,083.50	2,193.67	1,110.17	증)1,083.50	2,193.67	
⑤		국궁장	1	1	336.00	증)109.20	445.20	336.00	증)109.20	445.20	
⑥		조정선수숙소	3	-	180.00	감)180.00	-	540.00	감)540.00	-	폐지
⑦		볼링장	-	-	-	-	-	-	-	-	예정
⑧	-	부대시설	-	-	2,028.86	감)0.27	2,028.59	2,028.86	감)0.27	2,028.59	
	ㄱ	창고	1	1	-	-	-	-	-	-	
	ㄴ	창고	1	1	49.37	-	49.37	49.37	-	49.37	
	ㄷ	창고	1	1	109.00	-	109.00	109.00	-	109.00	
	ㄹ	창고	1	1	83.46	-	83.46	83.46	-	83.46	
	ㅁ	창고	1	1	78.00	-	78.00	78.00	-	78.00	
	ㅂ	화장실	1	1	-	-	-	-	-	-	
	ㅅ	화장실	1	1	76.26	-	76.26	76.26	-	76.26	
	ㅇ	생활체육시설	1	1	1,520.00	-	1,520.00	1,520.00	-	1,520.00	
	ㅈ	화장실	1	1	112.77	감)0.27	112.50	112.77	감)0.27	112.50	
합계					10,654.40	증)1,012.43	11,666.83	15,685.02	증)652.43	16,337.45	
(지하층)					-			2,210.08	-	2,210.08	
건폐율(%)		기 정	10,654.40 / 135,574 × 100 = 7.86%								
		변경	11,666.83 / 135,574 × 100 = 8.61%								
용적률(%)		기정	13,474.94 / 135,574 × 100 = 9.94% (지하층 면적 제외)								
		변경	14,127.37 / 135,574 × 100 = 10.42% (지하층 면적 제외)								

※ 볼링장 건축면적은 실시설계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변경예정

나.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운동장) 실시계획인가(변경)
- 명 칭 : 예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 분	사 업 시 행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예산공설운동장	기공공시설입지 승인면적	135,574㎡	충남고제108호 ('88.05.12)	
	금회신청면적	135,57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72,561	9,663						
1	향천리	산57-6	임	215	215	예산군					
2	향천리	산58-5	임	708	708	예산군					
3	향천리	207-13	답	37	37	예산군					
4	향천리	213-8	유	198	198	예산군					
5	향천리	214-3	전	1,144	1,144	예산군					
6	향천리	214-4	전	940	940	예산군					
7	향천리	214-5	대	627	627	예산군					
8	향천리	214-11	임	946	946	예산군					
9	향천리	214-12	임	7,315	7,315	예산군					
10	향천리	251-2	답	186	155	국 (건설교통부)					
11	향천리	251-5	답	294	294	국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건설교통부)					
12	향천리	251-13	답	1,644	11	국 (건설교통부)					
13	향천리	251-14	답	317	28	국 (건설교통부)					
14	향천리	251-15	답	544	93	국 (건설교통부)					
15	향천리	251-16	답	551	111	국 (건설교통부)					
16	향천리	252	체	7,536	6,951	예산군					
17	향천리	253-1	답	1,818	1,818	예산군					
18	향천리	253-7	답	1,307	1,307	예산군					
19	향천리	254-5	답	1,363	1,363	예산군					
20	향천리	257	체	57,477	57,477	예산군					
21	향천리	261	체	10,301	10,301	예산군					
22	향천리	263-2	구	1,179	1,179	국(건설부)					
23	향천리	263-3	구	866	35	국(건설부)					
24	향천리	266-8	대	311	311	예산군					
25	향천리	266-9	전	995	995	예산군					
26	향천리	266-10	전	423	423	예산군					
27	향천리	266-24	임	3,376	3,376	예산군					
28	향천리	266-25	과	11,880	11,880	예산군					
29	향천리	311	도	7,253	95	국(건설부)					
30	향천리	313	도	102	18	국(건설부)					
31	향천리	315-3	천	2,536	2,536	국(건설부)					
32	향천리	315-4	천	1,667	1,229	국(건설부)					
33	향천리	315-6	천	3,922	2,066	국(건설부)					
34	대회리	89-43	임	1,486	1,486	예산군					
35	대회리	84-12	과	512	512	예산군					
36	대회리	89-38	대	11	11	예산군					
37	대회리	89-5	체	400	400	예산군					
38	대회리	89-6	체	7,926	7,926	예산군					
39	대회리	89-39	전	8,358	8,358	예산군					
40	대회리	89-13	체	72	72	예산군					
41	대회리	89-40	과	334	334	예산군					
42	대회리	89-41	과	147	147	예산군					
43	대회리	89-42	전	34	34	예산군					
44	대회리	98-4	과	1	1	박은영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6 현대아파트 903-1403				
45	대회리	270-57	체	111	111	예산군					

다.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예산군청 도시재생과에 비치)